

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(소규모사업자용)

*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

가.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

⑥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	⑦ 평균인원 수 (⑥ /개월 수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현황

일련 번호	⑧ 지급연월	⑨ 제출연월	공제세액 계산	
			⑩ 소득자 인원 수	⑪ 공제세액 (⑩ × 200원)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
다. 공제세액 계산

구분	⑫ 소득자 인원 수 (⑩의 합계)	⑬ 공제세액 (⑪의 합계)	⑭ 공제한도	⑮ 공제세액 (⑬과 ⑭중 적은 값)
합계			300만원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⑮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.
2. ⑧ ~ ⑪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의 제출현황을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월별로 적습니다.
 - (예시)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 제출분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를 월별로 적습니다.
3. ⑧ 지급연월란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.
 - 예를 들면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 경우 “2401” 라고 적습니다.
4. ⑨ 제출연월란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.
 - 예를 들어 제출연월이 2024년 2월인 경우 “2402” 라고 적습니다.
5. ⑩ 소득자 인원 수란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의 소득자 수를 적습니다.
 - 다만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을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(세무대리인용)

*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공제세액 계산 내용

가. 공제세액 계산

구분	⑥ 소득자 인원 수 (⑭의 합계)	⑦ 공제세액 (⑮의 합계)	⑧ 공제한도 300만원 (세무·회계법인은 600만원)	⑨ 공제세액 (⑦과 ⑧중 적은 값)
합계				

나.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현황

일련 번호	⑩ 상호	⑪ 사업자등록번호	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		공제세액 계산	
			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	⑬ 평균인원 수 (⑫ / 개월 수)	⑭ 소득자 인원 수	⑮ 공제세액 (⑭ × 200원)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이 서식은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*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5제2항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제1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
* 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,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 포함

1. 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.
2. ⑩ ~ ⑮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의 제출현황을 각 사업자별로 적습니다.
 - ⑭ 소득자 인원 수란은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.
(예시)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을 대리하여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의 연간 합계를 적습니다.
 - 다만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의4서식(1)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을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.

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부표 (세무대리인용)

나.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현황(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: _____)

일련 번호	⑩ 상호	⑪ 사업자등록번호	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		공제세액 계산	
			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	⑬ 평균인원 수 (⑫ / 개월 수)	⑭ 소득자 인원 수	⑮ 공제세액 (⑭ × 200원)
16						
17						
18						
19						
20						
21						
22						
23						
24						
25						
26						
27						
28						
29						
30						
31						
32						
33						
34						
35						
36						
37						
38						
39						
40						
41						
42						
43						
44						
45						

※ 제1쪽의 「나.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 현황」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